

『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김 용 학

나. 제안이유

- 작은도서관 설립기준, 등록취소 사유 및 운영자 자격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등록취소 시 배상책임 면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삭제(안 제6조)
 - ‘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’ 문구 삭제
-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사유 정비(안 제8조)
 - 당초 : 등록취소 사유별 표기
 - 변경 : 상위 법령(도서관법 시행령) 조항 인용

- 작은도서관 등록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면제 조항 삭제(안 제8조)
 - 市에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므로 배상책임 면제 문구 삭제
-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요건 정비(안 제10조)
 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자 자격요건 대신 운영전문인력 확보노력 규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민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- 본 『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도서관법」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·정비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